

대구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2453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2453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성주군법원 2021. 9. 28 선고 2021가소327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2. 5. 18.

판결선고 2022. 6. 22.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2021. 9. 28. 선고 2021가소 327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64,516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당시 소유자 소외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에 임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원고는 소외 D, E, F와 함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아 2020. 12. 2. 대금을 납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지분은 1/4이다.

다. 피고는 원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다가 2021. 6. 15. 원고의 부동산인도명령(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2. 16.자 H 결정) 집행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계산과 같이 부당이득금 48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월 부당이득액 : 월 차임에 상당하는 3,000,000원

- 기간 :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20. 12. 2.부터 피고에 대한 인도집행을 마친
2021. 6. 15.까지 총 6개월 12일(실제로 6개월 14일이나, 원고 주장에 따름)

- 원고의 소유지분 : 1/4

- 계산 : $3,000,000\text{원} \times (6 + 12/30) \times 1/4 = 4,800,000\text{원}$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무실과 주택의 현관문 설치, 창고의 판넬벽체와 출입문 설치, 1동 건물의 샌딩룸 및 벽체 설치, 1동 건물 우측 벽체판넬 및 가림막 설치 등 공사를 하여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켰는데, 원고로부터 유익비를 상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은 공사를 하였다거나 그런 공사로 인하여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어 현재까지 존속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런 공사비의 액수와 건물 가치 증가분의 현존 가액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1.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치봉, 판사 서영애, 판사 김형태

별지